

電子商去來의 租稅에 관한 各國의 法制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ach Nation for Taxes of E-Commerce

김영준(Kim Young Joon)*

요 약 (ABSTRACT)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신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Key Word : 전자상거래, 조세제도, 인터넷 조세

목 차

I. 序 論

IV. 結 論

II. 電子商去來가 租稅制度에 미치는 影響

참고문헌

III. 電子商去來에 대한 國際機構 및 各國의
租稅制度

I. 序 論

인터넷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無國境性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기초하는 전자상거래도 국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고 그 이익을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상거래 환경은 물론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에 있어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 세계 각 나라는 자유무역을 위하여 관세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전자상거래 관련(관세 및 조세)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본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다만 현재 on-line상의 상품 거래에 대하여는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하여 굳이 과세가 필요하다면 물론 과세를 하여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회의가 그러하듯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회의도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배제할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시장기능 및 당사자 자유에 맡겨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점을 확보하려 하는데 반해, 기타의 나라들은 아직까지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특징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에 별도의 과세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제, 정책적 동향 및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電子商去來가 租稅制度에 미치는 影響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앞서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전통적 과세의 기본원칙들이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으로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자상거래의 특징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으로 과세권행사의 곤란을 초래하고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 등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하며,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하다. 또한 탈중개화현상¹⁾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상실 등으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다.²⁾ 이런 문제점을 볼 때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세

소비세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

1) 일반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협력을 하는 중개자(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납세의 무자의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당국의 행정력에 일조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전자상거래는 최종소비자와 직접거래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2) 백형기·최창렬, 「전자상거래시대의 법」, 미래와 경영, 2000. 163쪽 참조

심이 되고 있다. 기존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에서 과세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소재국가에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이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의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의 개념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관세분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관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상거래에 관세 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 단별 과세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므로 기존 매체를 이용하던 거래가 전자상거래로 급속히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의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기업들은 외국의 현지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됨으로 현재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것이다.

4. 小結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조세행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와서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기반이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전자지불 체계의 발달과 조세행정상의 활용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³⁾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식출 등을 위한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 세과정에서는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와 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나 과세회피목적의 다른 명분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수반되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그 실현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불시스템을 통한 과세방향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을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⁴⁾

3) 이철송, “전자상거래와 조세”, 세무사, 2001. 봄호 53쪽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금융설명제에 의해 과세관청이 금융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의 주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결제 및 무통장 입금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전자상거래의 거래 자체에 관한 정보는 별론으로 하고 거래의 결제와 외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III. 電子商去來에 대한 國際機構 및 各 國의 租稅制度

1. 國際機構

(1) OECD

선진국가의 국제기구인 OECD는 APEC, WTO 등 여러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폭넓고 심도있게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논의를 해왔다. OECD는 선진국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선진국을 주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회원국들의 상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 중 OECD는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산하의 각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통하여 조세 및 제반 여러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1997년 11월 편란드 투르크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OECD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확대에 수반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동 회의는 OECD가 편란드 정부와 공동으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벽의 제거(Dismantling the Barrier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로 열렸다. OECD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 OECD 업계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이외에 국제전기연맹,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공회의소 등에서 참석하여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 보호, 법률적 제도의 환경조성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참석한 BIAC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는 이미 확립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과 일치하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⁵⁾

OECD 산하 재정위원회는 관세 및 내국세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 상거래로 인해 과세당국이 직면한 위험과 국제적 공동보조의 필요성, 조세행정에서의 전자상거래 기술활용, 미국의 무관세지역화 제안 검토, 과세지표 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핵심이 되었는데, 조세분야와 관련해서 조세문제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이의 차별을 배제하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창출되는 소득의 성격의 규명, 비트(bit)세 도입 반대 등을 거론하였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득의 과세권 배분에 있어서 현재는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를 적용하나, 고정사업자의 결정문제에 따른 과세기반 상실 우려 등으로 새로운 세원배분원칙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며, 소비세 분야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기업간 거래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채택 등이 논의되고 있다.⁶⁾

핀란드 투르크회의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틀을 구성하게 될 기본적 원칙에 대해 기업과 정부간의 합의 도출이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998년 10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조세부과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4개의 보고서를 승인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노영훈 외,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지원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70쪽 참조

5)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74 ~ 75쪽 참조;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백서, 2000. 73-74쪽 참조.

6) 산업자원부, 앞의 책 74쪽.

첫째, 과세당국은 특정국가에서 사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그 국가에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사업하는 사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한다. 둘째, 과세방식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전통적인 신분확인원칙을 적용하도록 요청한다. 셋째,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 넷째, 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컨텐츠는 그 성격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다. 다섯째, 과세당국은 필요한 경우 대리납부 및 자진신고납세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⁷⁾

(2) WTO

WTO는 주로 관세와 관련된 사안을 취급하고 있다. 1998년 5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1년 동안 유예(1999년 12월 말까지) 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각료선언은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자상거래 무관세와 관련하여 WTO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채택이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WTO가 새로운 무역라운드 구축을 위해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이 1998년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연장에 또다시 1년 동안 유예할 것에 합의하였다.⁸⁾

WTO는 그동안 산하 위원회별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결과를 각 산하기구의 보고서로 제3차 WTO 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 뉴라운드 출범이 예정돼 있던 1999년 미국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말았지만 적어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그 하나는 전자적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조치를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되 추후 영구 무관세화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WTO에서의 논의를 계속함에 있어 그 형태를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각 이사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⁹⁾

(3) APEC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의 일이다. 즉 미국이 1997년 7월 지구촌전자상거래기본구상(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통신인프라 관련사안, 조세·관세 등 정부규제 관련사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그 역할분담, 전자지급제도·배달제도 등 물류 관련사안 등,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⁰⁾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이 APEC 차원에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자는 제한을 거듭하고 있는데, 2000년 5월 동경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회의 및 동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작업반회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분쟁해결제도의 설치, 조세문제와의 조화, 인터넷 범죄예방 등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

7) 정영현·심재진,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합의”, 한국조세연구원, 1999. 70쪽 참조; 중앙일보, 1999. 11. 2.

8)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 2000. 149-151쪽 참조

9) 연합뉴스, 1999.12.4.

10)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106쪽.

였다.¹¹⁾

2. 各 國의 租稅制度

(1) 미국

미국에서의 전자상거래는 민간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통일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가장 앞선 미국은 1996년에 재무부에서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토론판례를 발간하였다.¹²⁾ 재무부에 의해 선언된 원칙은 미국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인 중립성(neutrality)이다. 조세원칙은 시장의 구조 및 상업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선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조세제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사한 소득은 동등하게 취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은 전자적 방법으로 획득되는 그 외의 방법으로 획득되는 유사하게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조세정책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 규칙을 적용하기를 주장한다.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1997년 7월에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¹³⁾

먼저 전자상거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의 창설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단순·투명해야 하며, 조세의 징수비용최소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98년 10월에 인터넷세금자법(Internet Tax Freedom Act)¹⁴⁾¹⁵⁾을 입법화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별한 과세는 2001.10월까지 우선 3년간 금지하였고 최근에는 이를 다시 5년간 연장하였다.¹⁶⁾ 또한 미국 재무부는 인터넷 상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조세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국제과세의 확립된 원칙(the establish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taxation)과 조화되어야 하며, 국내 과세관할권(national tax jurisdictions)과의 충돌 및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피해야 하며, 집행을 하기에 간명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¹⁷⁾

11) 그러나 일단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 한 일이라 하겠지만, 비구속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APEC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법의 채택 또는 재정을 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왕상한, 앞의 책, 108~109쪽 참조.

12)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Tax Policy, November 1996.

13) 정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생하는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새롭고 불필요한 조세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1997년 7월 1일에 발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미국은 다른 정부도 재화와 용역이 전송되는 시기가 언제라도 인터넷 무관세 환경(the Internet a tariff-free)을 선언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4) The Internet Tax Freedom Act, <http://www.ecommercecommission.org/ITFA.htm>.

15)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의 과세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장차 더 명확해질 때까지 우선 일정 기간 특별과세를 금지하였고, 이 기간동안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복과세와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16) <http://www.dci.sppo.go.kr/adatabase-case/innerdata-0.3.html>.

17) 2000년 7월 27일에 필리핀 상무부장관 Mar Roxas 와 미국 상무부장관 Norman Mineta에 의해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체결된 전자상거래협약(electronic commerce agreement)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명료(clear)하고, 조화(consistent)롭고, 중립적(neutral)이며 비차별(non-discriminatory)적” 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행위법, 계약법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기규제를 장려해야 하며,

인터넷 과세의 어떠한 체계라도 다음의 원칙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첫째, 상거래를 왜곡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상거래의 유형들 사이에 차별을 해서도 안되며, 거래의 성질이나 장소를 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명료하고 투명해야 한다. 고유한 수익의 압도적인 대다수를 회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행이 쉬어야 하며, 번거로운 기록의 보관 및 모든 당사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그 체계는 미국의 과세체계와 국제적 당사자들의 그것과 조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이상의 원칙이 적용될 부분으로서 관세 및 과세분야를 살펴보면 유·무형물이라는 형태에 관계없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역을 전세계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무관세지역화 하자는 입장으로 인터넷조세자율법령이 1997년 3월에 의회에 상정된 이후 1998년 6월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까지 인터넷 비과세화가 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미국은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거래당사자의 잠재적인 익명성, 다양한 소규모 거래능력, 물리적 위치와 온라인 행위의 불일치성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조세제도일지라도 위의 원칙이 고수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현행제도 내에서 기존의 조세개념과 원칙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⁹⁾

(2) EU

EU에서는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U는 1997년 7월 본에서 “지구촌 정보 네트워크”²⁰⁾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의 조세에 대한 주제 보고서에서는 정부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가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지지 않는 조세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통적인 거래에 적용되어 왔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간접세와 관련해 높은 행정적 부담 및 복잡한 등록 시스템이 전자상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비트(bit)단위로 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비트세와 같은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²¹⁾

(3) 영국

전자상거래 조세제도에 대한 영국의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조세제도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는 바 특정형태의 상거래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중립성의 원칙. 둘째, 조세 규정은 간단·명확하고 적용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확성과 투명성의 원칙. 마지막으로, 이중과세나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비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세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효율

가이드라인 및 강제 기구(enforcement mechanisms)는 사적인 분야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 미국은 호주, 칠레, 콜럼비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집트, 유럽연합, 아일랜드, 일본, 요르단 및 영국 등의 국가들과도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협약을 체결하였다. 미국과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미국이 필리핀과의 체결한 협약의 조세조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8) 정영화·남인석,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0. 344~346쪽 참조

19) 신성식·한영희,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00. 6. 35~36쪽 참조

20) Global Information Networks. <http://www2.echo.lu/bonn/final.html>.

21)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79쪽 참조

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4) 일본

일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의 3개 부처 통산성, 우정성, 법무성에서 각각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관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경제거래가 복잡화·국제화되어,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얼마만큼 행했는가 하는 거래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돼 그에 따른 적절한 관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는 공평, 중립, 간소해야 하며, 전자상거래가 국제적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중관세나 탈세가 없도록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 관세와 관련하여 정보기술 제품 및 소프트웨어 등의 교역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²²⁾

일본은 정보기술의 우수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발달 등을 토대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동조하고 있고, 미국과 공동으로 1998년 5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조세문제와 관련한 일반원칙으로, WTO원칙을 수용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세 부과의 금지, 전자상거래의 조세부과를 위한 기본 틀 작성을 위한 OECD에의 참여와 인터넷상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긴밀한 상호협조 등을 선언하였다.²³⁾

(5) 호주

1997년 8월 호주국세청(ATO)은 조세와 인터넷이라는 보고서를 내어놓았다. 이 보고서는 산업, 세금 및 소득유형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관세표준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다는 것과 즉각적으로 조세수입에 미치는 가시적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⁴⁾ 또 ATO가 전자상거래정책 수립시 다른 연방정부기관과의 연계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6) 우리나라

우리정부는 인터넷을 통하여라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에 대해선 현행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음악, 출판물 등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²⁵⁾ 즉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5월 산업자원부를 주축으로 한 전자상거래정책 협의회에서는 ‘전자상거래종합대책세부시행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중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무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현행 대로 off-line상의 상품거래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고 on-line상의 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⁶⁾ 즉 off-line상의 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

22) 산업자원부, 앞의 책, 2000. 118쪽 참조

23) 백형기·최창렬, 앞의 책, 70쪽 참조

24) 이창희,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질서에 미치는 영향”, 정보법학, 1998. 제2호. 269쪽 참조; <http://www.rc.gc.ca/ecomm>.

25) 동아일보, 1998. 2.11.

26)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435쪽.

하여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물리적 운송을 필요로 함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on-line상의 상품은 전자신호일 뿐 물품이 아니므로 현행 제도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V. 結 論

전자상거래는 현재 형성과정에 있는 새로운 거래수단이며, 관련법제 또한 대단히 가변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 기술적·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질서에 일대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는 새롭게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이미 강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은 이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강국인 미국이 우리의 입장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일 것인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순수입국(정확히는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익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다른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정부당국의 혁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인 듯 하다. 그렇다면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노영훈 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백형기·최창렬, 「전자상거래시대의 법」, 미래와 경영, 2000.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백서」, 2000.
신성식·한영희,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00.

-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 이창희,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질서에 미치는 영향”, 정보법학, 1998.
- 이철송, “전자상거래와 조세”, 세무사, 2001. 봄호
-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 2000.
- 정영현 · 심재진,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합의”,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정영화 · 남인석,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0.
- <http://www.ecommercecommission.org/ITFA.htm>.
- The Internet Tax Freedom Act.
- <http://www.dci.sppo.go.kr/adatabase-case/innerdata-0.3.html>.
- <http://www2.echo.lu/bonn/final.html>. Global Information Networks.
- <http://www.rc.gc.ca/ecomm>.